아산탕정지구 2-A3블록 한들물빛도시 예미지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Ι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아산시, 천안시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7.12(금)	24.07.17(수)	24.07.22(월)	24.07.25(목)	24.07.29(월)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emiz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П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2.(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41**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861**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본 계약취소주택은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신 분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인 입주자 사전방문기간에 관람 가능합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은 23년 1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써, 입주 시까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하며,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4.07.17(수)	24.07.22(월)	24.07.25(금) 24.07.29(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금성백조건설 대전사무소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9	, 9층)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아산시,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Ⅲ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 - 30857 호(2024.07.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아산탕정지구 2-A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2~32층 8개동 총 791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2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계약 후 2024년 08월 29일까지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등 입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 후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게야 세대병		주택공급면적(n		공급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관리번호	모델	구 국 당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930041	01	084.6132A	84A	84.6132	24.9250	109.5382	42.9425	152.4807	61.4789	2	-	1	-	_	1	2
2024930041					합 계					2	ı	1	ı	_	1	2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1
합계	2	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총 세대수	층별 구분	금회 공급		공급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THE	작작표기	ㅎ 세네ㅜ	SE TE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Я	2024-07-29	2024-08-29
084.6132A	84A	791	13층, 16층	2	89,596,963	291,603,037	-	381,200,000	38,120,000	343,080,000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계약금,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 유상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 불가)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중 102동 1302호는 2023년 1월 31일~ 2023년 8월 16일까지 실거주 하였던 주택으로 현재 상태로 계약하여야하며, 현 상태 이외의 추가 및 교체 수선 등은 불가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주택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기 시공된 조건 그대로 주택 공급계약 외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추가 및 교체 수선 등은 불가합니다.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홈페이지 또는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토	호수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극역표기	0	<u> </u>	교교의 책임급객	2024-07-29	2024-08-29	
84A	102	1302	4,719,000	471,900	4,247,100	
04A	102	1602	4,719,000	471,900	4,247,100	

2.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동	호수	유상옵션 품목	세부내용 및 설치모델	품목별 공급금액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 2024-07-29	잔금 2024-08-29
	100	1202	주방특화	고급형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언더싱크	1,980,000	2.410.000	241,000	2.060.000
	102	1302	가전특화	가전특화 / 삼성비스포크(인덕션3구)	1,430,000	3,410,000	341,000	3,069,000
		시스템		(기본형)거실,안방,주방,침실1,2(5EA)	8,300,000			
84A			주방특화	고급형 주방상판(엔지니어드스톤)+언더싱크	1,980,000			
	102	1602	주방특화	팬트리선반(현관창고+주방펜트리)	330,000	14,020,000	1,402,000	12,618,000
			현관 및 수납강화가구	복도수납강화(복도장식장+스타일러장)	1,980,000			
			가전특화	가전특화 / 삼성비스포크(인덕션3구)	1,430,000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입주가 개시되었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입주일은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 전 세대 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 계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을 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빌	보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Sevience La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명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IV-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IV-2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천안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3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저	55조의3에 따라 청	약신청자의 배우지	가 혼인 전 주 틱	백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킈)가 있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대상자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	·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미	님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	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	Om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	구 중 단독세대인	l 분은 생애최초 특	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	¹ 성하는 경우를 말	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	체에 제출해야 하며	,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허	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	족관계증명서와 입영	양관계증명서를 통령	해 확인						
비고	■ 소득기준									
0175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	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7.12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율			소-	특금액					
	-112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고 ᄎ ㅁ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마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무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٧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 서비스 이용은	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22.(월) ~ 2024.07.31(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2024.07.2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공통 구비서류

VI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Home)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본인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0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0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 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기록대조일 : 출생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상세발급)			
		0	해외체류 (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본인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상세발급)			

■특별공급구비서류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발급)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가구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특별공급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계약장소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본인 :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상세'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상세'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0		위임장	청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에 비치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서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상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별표1 참조)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0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임신의 경우(계약장소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청약자	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대리인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신청시 추가서류	0		위임장	청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에 비치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등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표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메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주(현)" 총 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자영 업자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계약장소 비치
(근호	기타 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무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VΠ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일시: 2024.07.22(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07.29.(월) (13:00~16:00) • 장소 - 금성백조건설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9, 9층)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7.29(월) 1일간, (13:00~16:00)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9, 9층	042-242-2002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미계약 발생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5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입주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당첨자 본인 계약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0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0		계약금 입금증		• 창구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이체	
	0		인지세 납부 증명서		•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당사 연대납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_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은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본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 15만원)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과(癒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금액	농협	301-0271-4562-21	㈜금성백조건설

- 계약금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계약장소 제출 [현금 수납 등 계약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 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의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의 지정된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등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유상옵션 납부방법

가. 발코니 확장공사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농협은행	301-0271-4557-61	㈜금성백조건설		

나, 추가 유상옵션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품목	농협은행	301-0271-4557-61	㈜금성백조건설

- 계약금납부 : 계약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계약장소 제출 [계약장소에서 현급 수납 등 계약금 수납 불가]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주택으로 추가 유상옵션 품목은 기 시공된 조건 그대로 주택 공급계약 외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추가 및 교체 수선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함. (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 홍길동')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됨.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VIII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	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게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된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말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하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이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IX 단지 여건 등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완료 된 아파트임.

※ 신청 전에 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3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

※ 당 아파트 하자보수 개시 시점은 사용검사 승인일(22.11.16)부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주소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시행자	㈜금성백조건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34, 1동7층708, 709호(나성동, 르네상스)	042-719-5410	160111-0032972
시공자	㈜금성백조건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34, 1동7층708, 709호(나성동, 르네상스)	042-719-5410	160111-0032972
71671	㈜금성백조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83번길(탄방동)	042-630-9595	160111-0017304

■ 분양문의 : ☎ 042-242-200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